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대한 헌법소원

1. 청구인: 김명호, [REDACTED]

2. 청구취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2020. 8. 12., 2020. 9. 29.>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위에 나열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49조의 2, 2의2, 2의3, 2의4은 (이하, '감염병법')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유신헌법 등을 넘어서는 역사상 최악의 법으로 상식적 기본권 침해를 넘어 국민 개개인을 감시, 통제하는 법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3. 침해된 권리: [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 [헌법] 제17조 등

4. 헌법소원에 이르게 된 경위

(1) '감기보다 가벼운 코로나 증상'- 서울의대 오명돈 교수('지속 가능한 방역에 대한 어느 의사의 질문', 시사인, 2020.9.29)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944>

(2) 마스크 착용은 카메라 앞에서의 '정치적 쇼'라고 시인한 미국 민주당(Foxnews, 2020.10.2)

=> <https://www.foxnews.com/politics/democratic-pennsylvania-lawmaker-masks-political-theater>

### 마스크 착용은 카메라앞에서의 '정치적 쇼'라는 Tom Wolf, Wendy Ulman 미 민주당년놈들



1. 왼쪽 여자: 수화 통역사
2. 마스크/안경 쓴 년: 웬디 울만, 펜실베이니아 민주당 의원
3. 목소리의 남자: 톰 울프, 펜실베이니아 민주당 주지사

울프: '웬디, 연설할 때 마스크 벗을 거야'(So Wendy, I'm gonna take, I'm gonna take my mask off when I speak)

웬디: '나도 벗을 건데, 잠깐, 우리가 '약간의 정치쇼'하는 동안 참는 거지, 흐흐흐, 카메라에 나오도록'(I will as well, just, I'm waiting so that we can do a **little political theater**, so that it's on camera)

(3) 코로나는 신세계 질서를 만들어낸 바이러스(Ultimate Proof: Covid-19 Was Planned To Usher In The New World Order): => <http://seokgung.org/corona/covidfraud.htm>

결론: 위 (1), (2), (3)으로부터 코로나 빙자 조치에 이은 감염병법은 국민 개개인 통제 및 감시를 위한 '정치적 사기'가 명백할 뿐 만아니라, 대중교통 승차거부와 (이재명의)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대한 본인의 헌법소원 청구로부터 명백하게 입증되었듯이 이러한 위헌적인 감염병법을 빙자하여 반복적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것은 자명하다.

그리고,

[헌재 1994. 8. 31. 92헌마126] '...기본권(基本權)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그러한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

에 의하여 헌법소원 청구대상임이 명백하다.

참조: <http://seokgung.org/hunso/fraud.htm>

6. 청구 기간 준수

[헌법재판소법]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에 의하면 90일 이내라고 하였고,

2020.10.5일 알게 됨(참조: '마스크 착용 의무화..다음달 13일 이후 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SBS, 2020.10.3일자)

7. [헌법재판소 법] 제 70조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한다.

법사기 전문, 국민 기본권 침해 및 방조 본부(가칭: 헌재)

<http://seokgung.org/hunso/yes.htm#gam>

2020.10.5

김명호

